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09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운	이 *운 1955-11-10	전라북도 군산시 월영로 (삼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10-30
이 *영	이 *영 1963-04-09	전라북도 군산시 삼학안1길 (삼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10-30